

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보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·운영(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)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재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을 신설(안 제13조)

나. 기금의 용도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운용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으로 구분 관리함을 신설(안 제4조, 제5조)

다. 위원회의 기능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을 심의하는 기능을 신설 (안 제7조)

라. 기금결산 보고일이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였으나 80일 이내로 변경(안 제12조)

마. 위원회의 구성·운영 : 우리 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
(안 제6조 제3항과 제5항, 안 제7조 제2항, 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, 제42조, 제43조, 제44조

나. 지방자치법 제133조

다.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제29조 제3항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보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관련 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

○ 행자부 기금운영 관리지침 및 보건복지부 조례안 예시에서도 유사기금을 통·폐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다만 기금의 운용은 다른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·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,

○ 기금의 재원과 용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제43조에 의해 조성·운용되어야함이 원칙이며

○ 기금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

○ 위원회의 구성, 기능 및 직무에 있어서 우리 구 각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, 상충된 조항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삭제하였으며

○ 다만 지원대상, 지원신청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은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따로이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으며

○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사업 관련 기금이 각각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 운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